발 간 등 록 번 호
11-1660000-000404-14

우리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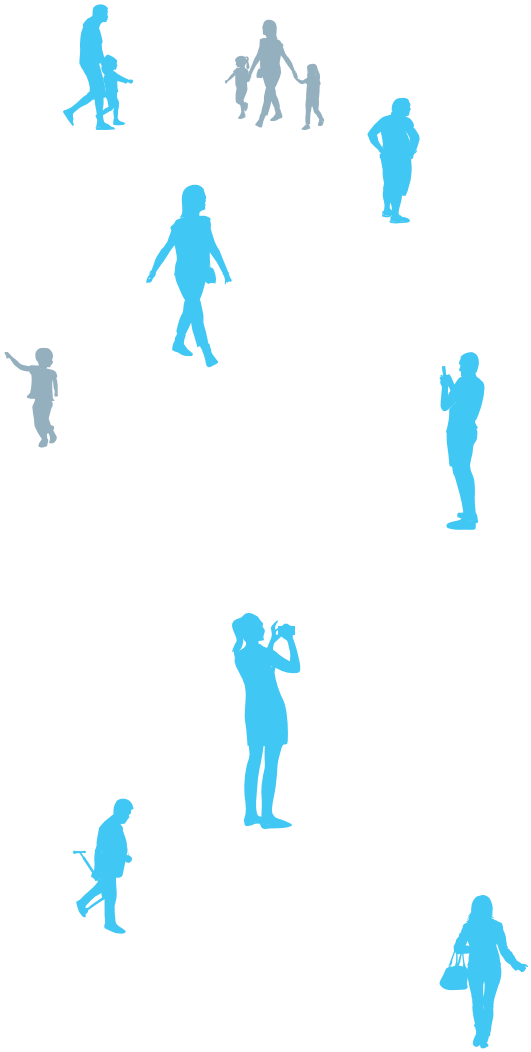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행정안전부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3. 자원봉사,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예방 및 구조활동, 안전관련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4.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안내

이매뉴얼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민간단체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됩니다.

3. 이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 매뉴얼의 내용은 다양한 지역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정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5. 국내에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련 전문가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개발된 매뉴얼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6. 지역축제 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7.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 발간은 할 수 없으며, 이 책의 본문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PART 01 서론

Ⅰ. 매뉴얼 개발 배경 002
Ⅱ.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004
Ⅲ. 용어의 정의 006
Ⅳ.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007

PART 02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사항

Ⅰ. 지역축제 계획 010
1. 일반 착안사항(공통) 010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18

Ⅱ. 지역축제 시작 전 022
1. 일반 착안사항(공통) 022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24

Ⅲ. 지역축제 진행 중 029
1. 일반 착안사항(공통) 029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30

Ⅳ. 지역축제 종료 시 033
1. 일반 착안사항(공통) 033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33

Ⅴ.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035
1. 사고현장 상황관리 035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038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40

PART 03 지역축제 유형별 관리요령

Ⅰ. 장소적 위험 특성 044
1. 산 044
1.1 일반 착안사항 045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48
2. 바다, 강, 호수 051
2.1 일반 착안사항 052
2.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60

Ⅱ. 재료적 위험 특성 065
1. 불 065
1.1 일반 착안사항(공통) 066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70
2. 눈·얼음 072
2.1 일반 착안사항(공통) 073
2.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76
3. 가스 077
3.1 일반 착안사항 078
3.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82

Ⅲ. 시간적 위험 특성 084
1. 야간축제 084
1.1 일반 착안사항 085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088

PART 04 지역축제 상황관리 매뉴얼

Ⅰ. 대응·수습 절차 092
Ⅱ. 단계별 상황관리 094

부록

부록1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104
부록2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107
부록3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114
부록4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리스트 115

PART. 01

서 론

Ⅰ 매뉴얼 개발 배경
Ⅱ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Ⅲ 용어의 정의
Ⅳ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Ⅰ 매뉴얼 개발 배경

-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하고 다치는 대형사고(11명 사망, 162명 부상)와 2006년 3월 26일 서울 롯데월드 무료놀이동산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많은 인파가 다치는 사고(35명 부상)를 계기로 공연 · 행사장에서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었다.

- 그러나 공연 · 행사시 관중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안내 책자가 없어 "안전한 공연"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 정부에서는 공연 · 행사에 따른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대학교수, 문화예술 전문가 등과 함께 매뉴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 국내에서는 아직 공연 · 행사장 관련 자료가 적어 영국의 공연안내서, 일본의 혼잡경비 매뉴얼 등 외국자료와 국내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연행사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6월 20일 「공연 ·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최초로 개발 · 보급하게 되었다.

- 이후 매뉴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과 사고발생시 수습 · 복구 대응추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기관변경 등 미흡한 부분을 추가 · 보완하며 2007년 12월 17일까지 3차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어 왔다.

- 그러나 최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해마다 1,000여 개소에서 계절 · 장소 · 시간 · 유형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 지난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행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09년 4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 시달 하였다.

- 이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및 유형별 안전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적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나
  - 그간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법적근거가 없이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일부 준용토록하면서 심의요청기관과 일부용어 등이 「공연법」과 상이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 등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본 매뉴얼은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된다.
  - 축제 개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축제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 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화된 진행단계별 및 유형별 안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개최자 등 지역축제와 관련되는 분들에게 안전한 지역축제를 진행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도록 하였다.

Ⅱ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 본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기관 · 단체 등이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에 적용한다.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사용하는 재료가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 매뉴얼은 「공연법」 · 「경비업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 · 「관광진흥법」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상 공연장과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민간기관 · 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개별법령에 의거 개최되는 공연 · 행사 등의 경우 그 법령에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 등에 따를 수 있고 없을 시는 본 매뉴얼 적용

- 본 매뉴얼은 기타 지역축제, 민간기관 · 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도 축제의 특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2. 권고대상

- 모든 축제(민간개최 축제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참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 순간 최대 예상관람객 1천명 이상 축제의 경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 행사기간 중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 모든 축제 보험가입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 5천만 원, (부상)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억 5천만 원

관련법령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 영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 개최 장소가 산 · 수면, 사용재료가 불 · 폭죽 · 석유류 · 가연성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공연법

–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관할 소방서장 통보

– 영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개시 7일전까지

경비업법

– 영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26조(보험가입) : 체육시설업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영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규칙 제42조 별표13(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 구축,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 보고

– 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법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대책 수립할 수 있다.

– 영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요건 등) :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 · 공급의 차질,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등

Ⅲ 용어의 정의

○ 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주요기능
  • 해당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나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 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심의
– 심의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민간 축제(행사)
– 심의규모(유형)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개최 장소(산 · 수면), 사용재료(불 · 폭죽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 행사기간 중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참여자
  • 지역축제의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지역관리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전기, 통신, 전국유선업중앙회 등)로 구성 · 운영
– 주요기능
  •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등

○ 지역안전관리협의체

– 참여자
  • 지역축제의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지역관리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전기, 통신, 전국유선업중앙회 등)로 구성 · 운영
– 주요기능
  •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등

Ⅳ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1 안전관리계획 수립 (30일 전)

○ 지역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작성자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담당부서
– 의견수렴 : 관할지자체 · 경찰서 · 소방서 · 전기 · 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

2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 요청 (21일 전)

○ 축제담당부서는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요청
–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시 · 군 · 구가 2개 이상일 때는 축제개최 시 · 군 · 구 · 합동으로 하거나 관할 시 · 도의 재난관리부서에 심의요청
– 지역축제를 민간기관 ·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 지역축제 담당부서는 민간기관 · 단체에서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공연법, 보조금 조건 등 검토 후 필요시 심의 요청

↓

3 사전검토 요청 (14일 전)

○ 재난관리부서는 심의 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 등에게 사전 검토 요청
– 요청대상 :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전기, 통신, 가스, 민간전문가 등 관계기관

↓

4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상정

○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대면심의 원칙)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10일 전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후 심의 · 토론

↓

5 심의결과 통보

○ 재난관리부서는 관계기관에 심의결과 통보(5일 전)
– 지역안전관리위원, 지역축제담당부서, 행사 개최 등 관계기관

↓

6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축제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계획 수립
○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 · 점검실시(행사 1~2일 전)
– 합동 지도 · 점검 시 축제행사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후 축제 추진
  ※ 참석기관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지역안전관리협의체위원)과 축제 진행에 따른 인 · 허가 대상 부서 관계자 참석(산림, 화약, 해경, 경찰, 민간 등)

PART. 02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사항

Ⅰ 지역축제 계획
Ⅱ 지역축제 시작 전
Ⅲ 지역축제 진행 중
Ⅳ 지역축제 종료 시
Ⅴ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Ⅰ 지역축제 계획

1. 일반 착안사항 (공통)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 지역축제 진행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긴급상황 발생시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폭우, 하천범람, 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위험지역과 산간, 계곡, 경사지역, 천변, 교통혼잡 지역 등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검토한다.

- 지역축제 행사장의 동시 최대 수용인원을 검토하여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를 넘을 때를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 소음 · 불빛 등 기타 요인 때문에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 · 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한다.

- 실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출입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위험이 없는지, 임시 시설물의 전도위험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비상구의 위치 등 피난안내 동영상을 축제 기간 내 방영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실외에서 불꽃놀이와 같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풍향에 따라 잔재물 등이 관중석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발생에 대비, 소방차 진입 등 접근성을 검토한다.

개최시기(시간) 검토

-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는 기상예보, 과거 기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기나 장마철을 피하고 맑고 회창한 날로 정하며, 최근의 국지성 호우를 고려하여 행사전 또는 행사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의 시간계획은 축제의 특성에 따라 밤, 낮, 새벽에 진행 할 수 있으나 축제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시작하여 일몰 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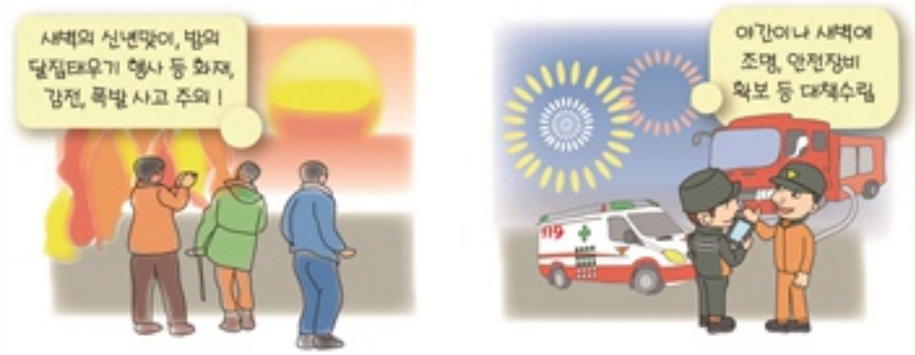

-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지역축제는 조명, 안전장비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신년 해맞이 행사 달집태우기, 빛의 축제, 불꽃축제 등 밤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화재 · 감전 · 폭발사고 등 축제 참가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겨울철에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 참가자에게 미리 방한복, 우의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홍보 실시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합동상황실의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의 규모, 특성, 참가자, 위치, 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상황실 설치 · 운영계획 마련
  -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 등 비상연락망 비치
  - 합동상황실에서는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축제의 추진현황, 안전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안전관리민관협의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구축한다.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전기, 가스, 통신, 민간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 및 단체(담당부서)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통신두절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안전관리요원 무전기, 확성기 등 비치)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단체 등일 때는 지역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반별 구성, 개인별 임무 · 역할 및 비상연락망 등
-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 단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임무, 기간, 인원, 행동요령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사전교육계획 등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요원,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민간전문가의 역할 등 해당 분야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획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요원 확보는 축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소방서,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지역축제 진행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 초동단계, 응급 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실 · 과별 업무분담 및 근무인력 투입계획 등 수립
  - 대규모 혼잡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취중 혼란행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지역축제를 방송사 등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최기관, 위탁단체, 축제관할 지자체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발생 시 기관 간 수행임무 등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고 역할분담을 하여야한다.
- 지역축제 기간내 현장구조 · 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 축제장내 일반의약품(소화제 등) 및 의료장비(혈압계, 체온계) 비치
  - 구급차, 응급조치요원의 사전배치계획 수립
  -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인근병원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 근무 요령을 마련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계획 및 근무수칙 마련
  - 상황실, 안전관리요원들 간 비상연락망 숙지
  - 긴급상황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눈에 띄는 근무복장 마련계획 등 포함

-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safety line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우, 외국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등
- 경찰서와 사전협의, 축제장 주변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권역별 및 시간대별 교통대책
  - 교통상황 유지 및 주정차 지도 · 단속
  - 행사 전 · 후 일시에 관람객의 집중에 대비한 대책
- 지역축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시설물, 관람객, 공연자, 축제진행자 등 분야별로 보험가입 여부 및 방법,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 대규모 지역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개별행사가 여러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역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 권역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투입계획, 안전통제선(safety line)설치계획 수립
  - 동일한 권역 내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 연락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축제가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 현지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야간근무 반 운영,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계획 등 마련
  - 야간에 불꽃놀이, 신년해맞이행사,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 조명축제 등을 계획할 때 화재와 관중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신년 해돋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대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 소방,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 지역축제장에서 경비행기를 운행하는 경우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경비행기 운행시 반드시 관계 기관의 비행 승인을 얻도록하고, 운행구간에 애드벌룬, 연 등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없는지 검토
  - 경비행기 운행구간에서의 연날리기 행사 등을 금지하고, 또한 관람객이 밀집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장 상공으로는 비행기 운항 금지
  - 경비행기 운행시 반드시 관계기관의 비행승인

- 종합안내소 설치 ·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물품보관 · 분실물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소 운영과 이에 따른 미아 발생 시 조치요령 마련

- 음식점 · 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 ·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식품 안전검사, 검사결과 조치, 식품위생업소 자율위생 관리
  - 식중독 발생 시 조치계획, 환자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호자 관리
  - 사고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

- 위생 및 응급환자 의료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식중독과 이질 등 전염성 질병예방대책
  - 방역소독 및 음식업소 위생관리와 이동 진료소 편성 · 운영계획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병원과 상시 대기체제 구축 등

- 지역축제 기간 중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정부기관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기상특보 또는 전염병에 대한 안전주의보가 발표되면 축제개최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축제취소 · 연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당국과 사전협의하고 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강구

- 지역축제가 국제적인 행사일 때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테러와 범죄 예방조치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는 필요 시 행사장에 범죄와 테러관련 예방대책을 사전수립하고, CCTV를 설치 · 운영
- 인허가 부서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축제 개최자와 대응 ·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 지역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관할 지역(시 · 군 · 구) 축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 · 후원 · 지원하는 고위험 지역축제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 고위험 지역축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
  - 기타 그 외의 지역축제와 민간기관 · 단체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관할 지자체장이 심의대상 여부 판단
  - 다만, 동일 축제가 동일기간중에 2개 이상지역(시 · 군 · 구)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축제 개최 시 · 군 · 구 합동으로 하거나 시 · 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지역축제 담당부서는 축제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1차 검토하여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한다.
- 재난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시킨다.
  - 심의 후 그 결과를 축제개최자, 축제담당부서 등 축제관계자에게 통보
- 축제개최자는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축제개최 전 반드시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부서(안전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1장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체계 참조

지도 · 감독 등

-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 점검 할 수 있다.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
  -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축제개최로 법령에 의한 인 · 허가 사항에 빠지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민간기관 · 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축제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축제의 경우, 행사주최와 협의하여 합동지도 · 점검 등 별도 안전대책 강구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 사전 수렴
  - 안전관리계획은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축제 전 최소 3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련 기관 ·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행사계획 및 주요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 설명하고 축제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축제장에 가설무대, 임시시설 등은 축제개최 전 1~2일 전까지 설치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축제 진행에 따른 각종 인 · 허가 절차 등을 검토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 기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축제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계획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는 축제개최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와 현장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축제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 및 지도 · 점검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후 심의를 실시한다.
  - 지역축제 담당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접수되면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지역축제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축제 관계자(축제담당부서, 축제개최자 등)가 참석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사전설명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부서는 심의 후 그 결과를 지역축제 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 등 관계자에게 통보
-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의 안전관리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는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행사개최자, 지역축제 담당부서 및 지역안전관리민간 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 · 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분야별 중점 점검항목, 점검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 현장 합동지도점검 시 지역축제에 따른 관련 인 · 허가 기관 및 부서도 함께 참석
  - 지역축제의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합동지도 · 점검을 위함 지역축제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마련

-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축제 일지라도 지역축제 담당부서 등에서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 관할 지자체 장은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담당부서 및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합동지도 · 점검 실시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 운영부서는 축제담당부서 또는 축제관계자가 시설물 안전,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기관 · 단체 일 때에는 축제추진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한다.
  - 지역축제담당 및 재난관리부서(안전관리부서)에서는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적극참여
- 지역축제 개최자와 협의, 유관기관 · 단체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행사개최자,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집회 허가 등 인 · 허가 절차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축제 전까지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지자체 인 · 허가 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성과 현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지역축제 전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현지 확인 철저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축제 개최자 등 축제관계자가 안전관리 또는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방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한다.

경찰서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참여한다.
-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경찰력 배치계획 수립과 긴급상황 발생대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축제장 주변도로 교통해소대책과 혼잡 경비계획을 수립한다.
- 합동지도 · 점검 대비 소관분야 중점 점검항목을 작성한다.
- 축제진행과 관련된 인 · 허가 사항을 검토한다.(화약류, 집회신고 등)

소방서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참여한다.
- 지자체 및 축제 개최자는 소방서와 사전협의하여 구조 · 구급요원 배치, 소방차 주차장소 지정 등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 발생대비 유관기관과 인근소방서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합동지도 · 점검 대비 중점 지도 · 점검 항목을 작성한다.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인 · 허가사항을 검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민간단체 등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참여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자체 및 행사개최자와 사전협의하여 유관기관 비상연락망과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합동지도 · 점검 대비 소관분야 중점 점검항목을 작성한다.
- 축제행사장의 전기 · 통신 · 가스 · 폭발물 등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Ⅱ 지역축제 시작 전

1. 일반 착안사항 (공통)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건과 기타 관련법에 의한 인 · 허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에 의한 인 · 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조건이 축제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현장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는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경찰, 소방, 전기, 가스, 통신, 위생 등 해당분야별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 합동지도 · 점검 시 인 · 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 축제장의 위치(내수면, 해상, 산지) 및 시설(임시시설, 놀이시설)등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

- 축제 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요령
    - 안전관리요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관람객 유도
    - 지역축제 참가자가 많아 줄이 길어질 때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안내 동영상 방영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지역축제 유형에 맞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 요령
  - 화재 발생 시 조치요령과 대피안내 요령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방법 등
  -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요원을 행사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점검 실시

- 비상연락체계 확인, 합동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축제 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 갑작스러운 돌풍, 집중호우, 기상악화 등 주변상황 악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한다.
- 야외 임시 무대 설치 시 일반인 출입 통제 및 설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다이내믹 ○○페스티발 시 야외무대 조명탑 붕괴사고 발생 (2011. 10월, 10명 경상)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지역축제 진행 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한다.
- 합동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임무별 안전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
  -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사용 숙지여부
  - 신고요령 초기진화, 대피방법 안내에 대한 교육
  - 긴급상황 발생대비 조치사항 등
- 지역축제 행사장 외곽 등 출입 금지구역을 지정 · 운영한다.
  - 위험지역 무대주위 등은 safety line 설치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 문안을 마련한다.
- 각종 안전사고 예방장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축제행사장 내에 비치한다.
  - 구조 · 구급 장비 등 비치 (강, 바다, 산간계곡, 차량 등 축제진행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장비)
-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검토 · 확인한다.
- 가설무대 등 임시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지도 · 점검 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먹거리장터 등 행사장 참여 업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먹거리장터 영업자 자체 일일안전점검 실시
  - 영업 마무리 시 화기 등 뒷정리
- 사고발생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지역축제 개최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할 시 상호 협의 한 후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시 남강유등 축제 시 음식부스에 화재발생(2011.10월)
※ ○○군 대장경 천년세계문화 축전 시 기념품 판매점 화재발생 (2011. 10월)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협의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주관한다.
  - 합동 지도점검은 안전관리계획과 심의조건, 분야별 안전점검항목 등을 중점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 주최측의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교육실태, 교통지도 및 구조 · 구급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
  -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 축제장의 임시시설물(가설건축물, 무대, 전광판, 기타 시설물 등)이 전도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구조물의 지지대가 전광판 상부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검토

※ ○○시의 축제 중 운동장의 가로등이 전도되는 안전사고 발생(2004년, 4명 부상)
※ ○○시의 축제 중 우수농산품 경매장에서 대형 전광판(10m×1.8m)이 바람에 의해 전도되는 안전사고 발생(2009년, 14명 부상)

- 교통, 전기, 소방, 가스 등은 축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을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축제 개최자의 합동상황실 설치여부 및 비상연락체계가 적당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한다.

※ 축제규모가 적어 안전관리가 필요치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합동상황실을 제외하고 안내실 등을 설치

- 유관기관의 합동 지도 · 점검 시 안전에 중대한 문제 발견 될 경우 즉시 보완하고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축제행사장 및 주변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관람객 수용인원 적정성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 · 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 · 구급 및 비상대피통로 확보 여부
-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타 시설 · 구조분야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지반침하, 경사지 등 임시가설 구조물의 위험여부
  - 와이어로프 파손 · 마모, 장착부위 단면감소 여부
  - 조명 · 무대시설 · 광고탑 등 부속시설 전도 위험성 여부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경찰서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주변 접근도로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혼잡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방안을 강구한다.

소방서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긴급상황 발생대비 초기진화 및 구조 · 구급 기능 보강을 위해 인근 소방서와의 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구조 · 및 장비의 현지 지원에 따른 위치 참여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 소방안전 분야의 주요사항을 점검한다.
  -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화기관리 적정성
  - 피난 · 소화통로 확보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 축제장 인근 소방차량 등의 근접 배치 가능 여부
  - 비상시 피난 안내도 · 피난 요령도
  - 위험물질과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긴급상황 발생 때 이용객 행동요령 등

전기, 통신, 가스 등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상황유지 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중심의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다.
  - 합동 지도점검 시 중점점검 항목과 심의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전기, 통신, 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 전기안전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배선불량이나 전기기기 접지 적정 여부
  - 전기 인입구 등 누수, 누전과 보호시설 적정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전기 시설 안전관리 상태
  - 행사장 내 전선 노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 접촉 차단 여부

  -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과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표지 설치 여부 등 기타 전기 설비 안전관리 실태
- 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을 지도 · 점검 실시한다.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 상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이동식 부탄가스연소기의 사용자제(과대 불판 사용금지, 부탄캔 분리 보관 여부 등)
  - 지하실 가스사용 장소의 환기 및 통풍관리 상태 적정여부
  - 가스배관 밸브 작동불량, 배관 매설, 고정상태 등
- 기타 시설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 기계설비 배관 파손 · 누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 보일러공, 공조시설과 설비배관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등

Ⅲ 지역축제 진행 중

1. 일반 착안사항 (공통)

- 지역축제 진행 중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 여러 장소 또는 여러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합동상황실에서 축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한다.
- 지역축제 행사장내 종합안내소를 운영한다.
  - 물품보관 · 분실 센터 운영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소를 마련하고 미아 발생 시 조치요령에 따라 부모에게 인계
  - 안전관리요원은 음주자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음주자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을 시행한다.
  - 관람객 사전 순차적 입장실시
  - 안내요원의 능동적 임무수행 교육

※ ○○시 세계불꽃축제 전야제 행사 시 관람객 입장 통제로 안전사고 발생(2011. 10월)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지역축제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관리자는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축제의 형태, 참여인원, 축제장소, 축제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지역축제 실정에 맞게 배치
  -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안전관리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사전 매뉴얼을 참고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 구급 조치 등

※ 09.00.00일 ○○군의 국제요트 경기도중 요트가 반환점을 통과 중 탑승자가 바다로 빠져 사망사고 발생, 당시 사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

▶ 적정위치 안전관리 요원배치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안전사고 예방 가능

- 차량 출입구에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한다.
  - 축제장의 주차장과 주요 진 · 출입구에는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안전 관리 철저
  -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의 경우 관람자와 차량동선이 겹쳐지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는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 긴급상황발생 대비 '비상차량 동선'을 확보한다.
- 축제장 내 · 외의 잡상인 단속을 한다.
- 종합상황실에서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상황을 유지하고, 당일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지역축제 도중 대규모 재난발생 시는 즉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발생!

- 민과 군이 각각 주관해 벌인 제2회 2008 계룡군(軍) 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에 구경 온 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송강동 소재 모초등학교 1학년인 아무개(8)군이 축제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치어 숨진 것.
-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후 50분이 지난 4시 10분경, 과다 출혈로 이미 손쓰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사망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사고가 발생한 병영체험장 앞 도로는 초등학생 참여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사고 직전 안전요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병원 후송도 늦어졌다. 축제장에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한다.

– 출저: 오마이뉴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역축제 진행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 시 축제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 단체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축제진행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축제 관계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위생 관련부서에서는 행사개최자와 협의하여 식품 ·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자율위생 지도
  - 식중독 발생 시 운영관리계획, 환자 발생 시 수행사항, 환자와 보호자 관리실태
  - 사고발생에 따른 처리사항 등
- 축제 담당부서에서는 축제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요건,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점검하여 미이행 시 즉시 시정 · 조치토록 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역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시킨다.
- 축제 개최자 및 유관기관과의 상황을 유지한다.

경찰서

-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장 혼잡지역의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행사장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한다.
- 유관기관과 상황을 유지한다.

소방서

- 축제기간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조 · 구급요원 및 소방차를 현장에 대기시킨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및 인근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유관기관과 상황을 유지한다.

Ⅳ 지역축제 종료 시

1. 일반 착안사항 (공통)

- 지역축제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 지역축제가 마무리되면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전문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 주차장 진 · 출입구의 교통 혼잡 상황을 막도록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한다.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출입구, 주차장 등에 배치한다.
- 안전관리요원 출입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을 유도한다.

- 지역축제 시 임시로 설치한 임시시설과 안전저해물질(못, 쇠말뚝 등)을 안전하게 철거한다.
  – 잔불정리, 폭발성 화약 잔재물 등 위험물질 제거 및 확인 (축제담당책임자)

- 지역축제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시설물관리인에게 인계한다.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 임시 시설물 철거 후 안전저해물질 제거를 확인한다.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경찰서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경찰력을 배치한다.
- 지역축제장주변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 지하철 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관중 및 교통정리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소방서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인력 등 공연 · 행사장 주변을 대기한다.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기타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시설물 소유자는 축제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 지방자치단체관계자와 시설물소유자는 가시설물 철거 후 안전저해물질 제거를 확인한다.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Ⅴ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1. 사고현장 상황관리

인명 우선 구조 실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 · 구급하여야 한다.
- 경찰 ·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 · 구급하여야 한다.
-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피난유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한다.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중이 사고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추가 사고방지를 위하여 경찰과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 요청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 등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119와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축제 관계자는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119구조 · 구급요원들이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축제 관계자는 사고발생 즉시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2차 재난방지

- 사고발생 즉시 모든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에서는 통제선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우선, 부상자 구호 후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없애고 현장정리 등의 안전을 취해야 한다.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 긴급구조 활동과 현장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운영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에서는 교통정리, 현장 접근통제 등을 실시한다.
- 지역본부장은 긴급구조기관, 지원기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를 총괄 조정한다. 단, 인명구조 · 응급조치 등 긴급한 조치에 대하여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한다.
- 부상자는 응급조치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지역본부장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 시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 종사를 명하고 토지 · 가옥 사용 등 응급부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조치에 한한다.
-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인접 시 · 군 · 구 또는 관할구역 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상황보고 및 전파

- 행사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즉시 구두(전화)보고 또는 FAX로 보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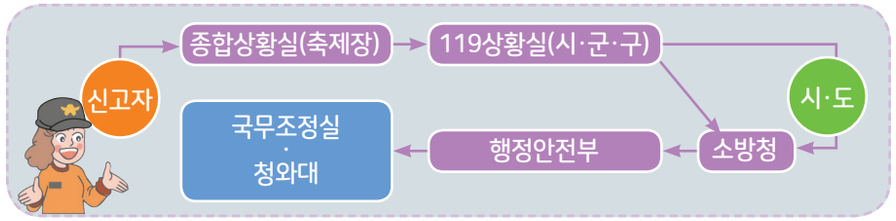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한다.
  - 설치장소, 근무반원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보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현장 사고실태를 파악하고 수습을 주도한다.
- 부단체장 등 간부 비상소집과 각 실 · 과별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장에서는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 현장지휘는 시 · 군 · 구 긴급통제단장이 실시하나 필요하면 시 · 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직접 지휘
  - 사고현장 관할 시 · 군 · 구에서는 현장지휘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 수습 · 복구 조치
  - 현장에 출동한 각 유관기관과의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 상황실 간의 유 · 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와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
  -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요청과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운영
- 사고현장 통제선을 설치 · 운영한다.
  - 제1통제선은 통제관이 설치하고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 인력과 장비만 출입
  - 제2통제선은 경찰관이 설치하고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적 · 장비 등 동원명령
  - 구조 · 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와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 동원 등

2. 사고발생 수습 · 복구관리

사고현장조사 등

-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재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한다.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교훈과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 통신 · 전기 · 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하여야 한다.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원인 · 피해내용을 파악한다.
- 피해조사 완료 후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한다.

사상자수습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과 부상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응급 구호용품지급, 급식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 수용 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사고원인, 책임자 규명 후 당사자 간 원활한 보상대책이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대형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으로 추진한다.
- 필요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을 긴급소집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한다.
- 재난발생, 진행, 수습, 상황관리와 지휘통제 등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본부상황실과 현장 간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적시 적절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보상 등 마무리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한다.
  - 합동분향소 설치, 영안실 확보, 장례비 지급, 장지알선 등 피해자와 유족 간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한다.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협의를 한다.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과 재난발생 원인 조사 · 분석
  - 책임소재 분석 및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시 · 도, 시 · 군 · 구에서 적극 중재 유도 등
- 신문 ·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주민 동요를 방지한다.
-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필요 시 기관장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주민 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 즉시 정정보도 요청, 주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다만 축제 개최자가 민간단체 등 일때는 지역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 및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 경찰, 소방 등에 현장관리를 협조 요청한다.
- 소방 · 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 · 출입로를 확보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 · 관리한다.
- 피해시설과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
-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사고발생 시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필요하면 응원요청 및 응급조치 등을 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와 협의 후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한다.
- 이재민구호 및 방역을 실시한다.
- 피해조사를 협조한다.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한다.
- 대표단과 피해수습을 협의한다.
- 필요 시 언론홍보 및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한다.

경찰서

-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배치하고 현장 접근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을 설치한다.
-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를 한다.
-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 관리를 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한다.
- 사고발생 원인 및 책임자 규명 등을 수사한다.

소방서

-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 운영한다.
- 구급차, 소방인력 등을 배치, 인명구조와 사상자를 이송한다.
-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을 설치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한다.
-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타

- 관계행정기관 및 시설물 운영자는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 및 복구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대형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지역축제 개최자가 한다.
  - 다만,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단체 등 일때는 지역축제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동일 축제가 동일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시, 도중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대규모재난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기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주관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

PART. 03

지역축제 유형별 관리요령

Ⅰ 장소적 위험 특성
Ⅱ 재료적 위험 특성
Ⅲ 시간적 위험 특성

Ⅰ 장소적 위험 특성

1. 산

위험요인

- 지역축제가 산악지역에서 개최되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따른 대처가 곤란하고, 야간의 경우 축제의 경계선 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낙상사고,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대상축제

- 바래봉 축제, 억새태우기 축제, 산나물 축제, 단풍축제, 눈 축제, 철쭉제, 마운틴 페스티벌, 해맞이 축제, 양록제, 달집태우기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 ○○군 억새태우기 행사는 산 정상 주변에서 진행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불이 방화선을 넘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람객이 사망 및 부상당하는 안전사고 발생(2009년)

▶ 관람객 안전을 위한 충분한 방화선 미구축, 안전대피 공간과 비상통로 미확보 등

1.1 일반 착안 사항

- 산악지역에서 개최하는 억새태우기, 산악자전거 대회, 암벽등반대회, 산악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는 축제 개최자는 축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최시기, 장소, 시간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악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행사를 마무리하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별도 야간안전대책 수립

- 축제 중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돌풍,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 계획 때 기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대책 강구

- 억새태우기, 달집태우기 등 산에서 불을 사용하는 축제는 돌풍 등에 대비하여 기상상황, 화재발생 시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축제계획 시 방화선 구축, 물 뿌리기, 산불진화요원 배치 등 산불방지대책 수립
  - 산불 발생 등으로 긴급대피상황 발생 시 참가자가 일시에 움직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때 참가자 인원과 축제장의 지형을 고려하여 안전대피공간과 비상통로 확보
  -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때에는 화재의 발생률이 높으므로 행사의 축소 등 특별한 대책 강구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 소방,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축제가 야간개장까지 진행되는 경우 야간근무자 운영, 야간조명계획, 진·출입구 확보 및 행사종료 후 이동계획 등 야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지역축제행사장 주변에 암반지역, 경사지 등의 위험지역이 있는지 사전검토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위험표지판과 safety line 등을 설치하여 낙상사고 등을 예방토록 조치한다.

– 긴급대피 상황발생 시 관람객의 동요로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곳에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도록 계획

– 주요 출입구에는 safety line을 설치하여 유사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낙상사고 등은 신체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개최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헬기 및 구조 · 구급요원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산악자전거타기 등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축제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산악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사고(낙상사고, 탈진, 낙석사고, 낙뢰사고 등)의 예방대책으로 참가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한다.

– 낙상사고는 돌풍, 지반약화, 판단 미숙, 음주, 영웅심, 기술부족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 사고발생 시 대부분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주의 철저

–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연약해져 암반이 붕괴하거나 약해져 낙석사고가 일어나므로 사전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은 축제참가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 특히, 봄철 낙석, 여름철 산사태, 겨울철 눈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축제 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대책 강구

-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낙뢰는 산 정상부위 또는 높은 지역에서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먹구름이 끼거나 돌풍이 불 경우 축제 개최자는 참가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조치한다.

– 번개가 발생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하고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하도록 교육 실시

- 축제개최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주변지역에서의 축제 개최를 지양하여야 한다.

- 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의약품과 구조 · 구급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고 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축제 관계자에게 사전교육 실시

- 지형적 요인과 입목으로 산에서는 시야가 좁고 정보수집이 어려우므로 "긴급상황 대처요령"을 포함한 행사장 안내도를 제작 · 배포한다.

- 암벽(빙벽) 등반대회 개최 시 참가자의 범위는 훈련기관(암벽과 등산학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유경험자를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심의 의뢰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행사 전까지 보완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민간산악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그간의 안전사고사례 및 축제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산악지역의 정상부근에서는 갑작스런 돌풍, 회오리 바람 등에 의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공연장, 무대 장비 등)의 전도위험이 크므로 합동지도 · 점검 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 급작스런 돌풍, 폭우, 하천수위 급등, 자동우량경보 발령, 낙뢰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경찰서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산악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은 대부분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명구조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헬기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지역축제기간 중에는 이동용 가스시설에 의한 가스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순찰활동을 한다.
  - LPG 가스시설의 설치불량 및 가스통의 장시간 햇빛 노출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축제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이동식 가스 시설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우기 시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없는지 점검한다.
  - 전기설비의 접촉 불량, 단락 등에 의한 불꽃방전 발생 여부와 주변 가연성 물질제거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지난 14일로부터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제천시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입구인 청풍랜드 주차장에 먹거리 장터를 개설했다.

제천지역 한방음식점 5곳을 입점시켜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이 지역 한방음식을 선보이고, 먹거리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19일 오전 9시께 이곳에 돌풍이 불면서 천막이 모두 무너졌다. 천막이 붕괴되면서 내부에 있던 냉장고와 집기, 식재료상자 등도 부서져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시와 먹거리 장터 민간 위탁사업자가 응급복구에 나서기는 했으나 영화제 행사 5일차인 이날 식당가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먹거리 장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음식점 운영이 활기를 띠는 시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칫 LP가스통 폭발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큰 피해를 당한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보상도 막막하다. 업주A씨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주최 측이 약간의 보상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먹거리 장터는 운영 초반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청풍면 번영회의 요구로 먹거리 장터 천막 일부를 제공했다가 번영회가 전문 야시장 업자에게 재임대하면서 한방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운영하다 보니 보험가입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복구를 앞당겨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요약).

– 대전 투데이(2008. 8. 19) 제천/○○○기자 –

2. 바다, 강, 호수

위험요인

- 바다, 강, 호수 등 주로 물과 주변자연 경관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축제에는 익사사고, 심장마비,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수상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상축제

- 바다축제, 호수축제, 해변축제,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갯벌체험, 바다수영대회, 세계요트대회, 빙어축제, 머드축제, 오징어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거북선 축제, 해양축제, 유등축제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사례1 ○○군 명태와 겨울바다축제 행사 중 음주차량이 장사 중인 상인 1명을 치고 바다로 전복된 사고발생
(2008년 운전사 1명 사망, 동승자 1명 경상)

▶ 바다와 행사장의 이격거리가 좁고 안전수칙 미이행(음주운전)

사례2 ○○군 호수축제 행사로 추진한 수영경기에서 참가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안전사고 발생
(2004년, 사망 1명)

▶ 수영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수상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

사례3 ○○군 방어축제 행사에서 정원을 초과한 소형 어선을 타고 낚시 체험 중 어선이 침몰하는 안전사고 발생
(2006년, 사망 5명)

▶ 수상안전수칙 비준수(안전조끼 미착용)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

사례4 ○○시 강변 레포츠 축제장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변에서 놀던 어린이가 익사하는 안전사고 발생
(2007년, 사망 1명)

▶ 보호자의 어린이 보호와 수상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

사례5 ○○군 강변공원 축제행사장에서 순간적인 돌풍(초속 25m)으로 텐트가 전복하는 안전사고 발생
(2007년, 부상 4명)

▶ 돌풍 등에 대비한 텐트 고정 지지대 설치 미흡 등

사례6 ○○군 범선 축제 중 요트가 반환점을 돌다가 탑승객이 붐대에 머리를 부딪혀 바다에 추락하는 안전사고 발생
(2009년, 사망 1명)

▶ 수상 안전수칙(구명조끼 미착용) 미준수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

2.1 일반 착안사항

공통사항

- 바다, 강,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익사사고, 심장마비, 어린이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간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선박의 승선정원 초과, 수영전 준비운동 미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는 해양경찰서, 소방서, 수상구조대 등과 함께 현장대비체계를 유지하여 긴급구조 · 구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가능토록 현장대기 등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바다, 강, 호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상안전요원의 적정장소 배치, 행사참여 선박의 승선정원 준수,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상축제에 참여토록 조치
  - 축제 개최자는 수상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사각지역에 대한 수상안전요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축제 참여자가 준비운동 부족과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갈 때 심장마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높으므로 사전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축제의 경우 해양경찰서,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기관과 기상 · 해양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 바람(강풍, 돌풍), 기온, 조석, 조류, 수온 등 기상 · 해양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서,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전문기관과 협의
  - 해저지형에 따라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역,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지역,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역 등 위험구간에는 부표 및 safety line을 설치하는 등 참가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

※ 이안류 : 역조(逆潮)라고도 불리며 해안으로 밀려들던 파도에 의해 갑자기 먼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뜻함

  - 바다수영, 갯벌체험과 바다 갈라짐 행사의 경우 썰물 · 밀물 시간 등 위험시간대를 피하여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바다, 하천, 호수 등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육지와 달라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도 기상 · 해상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 축제 전 상황에 따른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가 참여하는 수상축제는 보호자를 동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 다수가 모이는 물놀이 장소에는 수상안전요원을 집중배치

- 지역축제 행사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배치와 임무 점검 등

선박을 운항하는 수상축제

- 지역축제 행사로 유람선의 임시운항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유람선 운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자와 정신이상자의 승선 및 선박운항금지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안전운항대책을 강구한다.

- 해양경찰서, 해양구조대 등 해양안전 관련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이때 상세 역할 분담 및 조직 구성은 수상안전관리 계획에 따른다.

- 낚시, 물놀이 등 수상관련 행사 때에는 장소별 수상안전요원과 선박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낚시 체험행사의 경우 일정(안전)구역 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 축제 개최자는 수상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사고사례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물놀이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구조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명사고 대비 구조대 편성과 수상 감시탑 설치 · 운영
  - 구조 · 구급장비를 사전 배치하고 성능확인 등 점검실시

- 행사 당일 기상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 제주 서귀포 방어축제 시 풍랑으로 행사어선 전복(2006. 11월, 5명 사망 · 실종)

유·도선 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사항

- 선박 검사증서 소지 및 안전검사 수검 의무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안전운항 의무
  -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 이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수상레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수상레저사업 등록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조종면허 및 음주행위 금지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안전운항 의무
  -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 안전검사, 영업구역외 영업 등 위반시(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 안전장비 미착용자, 운항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하는 경우(과태료 100만 원 이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수상축제

- 수상축제에 사용되는 모터보트, 요트 및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장비 ·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선정한다.

- 수상축제 참가자는 술,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축제개최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축제 전 지도 ·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수상레저법 제22조에 따른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 및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정하여지는 정원에 따른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히 경계한다.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발생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한다.
-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를 한 경우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충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15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개인안전장구 착용의무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레저활동(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 운항규칙 준수
  - 기상특보 시 운항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 수상레저기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야간 레저활동 금지
  -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 까지(과태료 100만 원)
-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종(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원 초과 수상레저가구 조종금지
  - 안전검사 시 지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금지(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의무 위반(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영업행위 금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수상축제 개최자

- 축제 계획 시 기상 · 수상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상안전관리 요원의 현장배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강풍, 돌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조석, 조류, 수온 등 기상 · 해양 예보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수상축제 참가자가 음주 후 바다에 입수, 선상퍼레이드에 참가, 낚시어선을 운항 또는 승선하는 등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 수상에서 음주 후 바로 입수하는 경우, 심장마비 등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크므로 안전대책 강구

- 수상축제 참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상안전요원, 경찰(해경) 구조 · 구급차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토록 한다.
  - 어선낚시 체험장, 물놀이 장소, 수영대회 장소 등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요트경기, 물놀이 체험장 등에는 구명조끼를 착용 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수상안전 수칙 준수

-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또는 관공선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고 선박별 수상안전요원을 승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음주 후 운항 및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수상축제 중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개최자,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수상구조대 등과 협의하여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수상축제장 주변 구명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 장비의 사전배치 여부 등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해양경찰서

- 수상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 · 점검 실시한다.
  - 수상안전관리계획이 현지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찰서, 소방서, 수상구조대 등과 협의하여 합동 지도 · 점검실시
  - 수상축제 행사장 내 구명줄을 부착한 구명부환, 구명줄 발사기 등 인명구조장비의 확보 여부와 수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선박에 승선할 인원은 적정한지 등

- 수상레저활동 시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등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 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점검 실시

-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와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제한하고 행사연기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바다축제, 해변축제는 풍랑 등 특보 발령 시 축제의 계속 진행여부 검토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서귀포시장 등 5명 사망·실종

-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 최남단방어축제에 참가한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 7명을 태운 소형어선이 마라도 부근 해역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 25일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 7명이 탄 모슬포선적 소형 낚시어선 해영호가 침몰했다.
- 이 사고로 황대인 서귀포시 대정읍장,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임관호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3명이 숨지고, 서귀포시장과 선장 김씨가가 실종됐으나 윤세명 시장비서와 서귀포시청 직원 강창우씨는 구조됐다.
  - 사고 원인 및 문제점 : 해영호 침몰은 일단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에다 해상의 거친 파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침몰 현장에서 구조되어 한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윤세명씨는 "높은 파도에 의해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서 침몰하게 됐다"며 "나는 드럼통을 붙잡아 살아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짧게 말했다.
- 해경 관계자는 "거칠게 치는 파도로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장이 배를 좌현으로 트는 순간 기울어지며 침몰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해영호는 지난 7일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당시 선장을 포함해 정원이 6명이지만 이날 출항에는 정원을 1명 초과한 상태에서 해경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사고는 정원을 초과해 배의 무게 중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센 파도를 피하며 선수를 트는 순간 전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요약)

- 연합뉴스(2006. 11. 25. 18:00) -

경찰서

- 수상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대비 축제장 주변 순찰활동을 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수상축제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대비 소방차, 구조, 구급요원 등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수상축제 행사장에 설치하는 이동용 LPG가스시설의 불안전한 설치와 가스통의 햇빛 노출로 인한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순찰활동을 한다. 특히 지역축제가 장기간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축제기간 중에 이동식 가스 시설의 가스 누출 여부 등 현장확인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 기기의 절연상태, 노출 충전부, 기기의 방수상태 등을 점검한다.
-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는 없는지 점검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Ⅱ 재료적 위험 특성

1. 불

위험요인

- 도심지, 산간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달집태우기, 연등행사, 불꽃축제, 억새태우기 등 불을 활용한 축제에서는 돌풍과 꽃불재료에 의한 화재 · 폭발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축제 계획 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대상축제

- 세계 불꽃축제, 달집태우기, 억새태우기,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달맞이행사, 연등축제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사례1 ○○광역시의 불꽃놀이 중 폭죽재 일부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날려 관람석으로 떨어져 관람객 눈에 들어간 사고 발생
(2013년, 응급처치 135명, 구급차 후송 23명)

▶ 강풍 등의 자연여건 고려 미흡, 관람위치에서 충분한 이격거리 미확보

사례2 ○○군의 산 정상부근에서 억새태우기 축제 진행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람객이 안전사고 발생
(2009년, 사망 7명, 부상 81명)

▶ 축제계획 시 피난 공간과 대피통로 미확보, 기상악화(돌풍)에 대처 미흡

사례3 ○○군의 불꽃놀이 중 폭죽이 발전기 주변 누출된 기름에 인화되어 조형물과 차량이 연소하여 사고 발생
(2007년, 차량 7대 전소)

▶ 불꽃놀이의 낙하지점 선정 미흡

사례4 ○○시 봉화대 재현행사 중 연막탄이 폭발하는 사고 발생 (2009년, 부상 2명)

▶ 연막탄 재료인 화약의 사용 부주의

사례5 ○○시 말을 타고 도심지 기마행진 중 폭죽 소리에 놀란 말이 날뛰다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 발생 (2009년, 사망 1명)

▶ 안전요원을 동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대책 미흡

1.1 일반 착안사항(공통)

- 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돌풍 등), 이동식 가스 시설 및 불꽃축제 재료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 · 폭발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억새태우기 행사, 달집태우기 등 산지에서 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생각지 못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방화선 구축, 관람자 대피 공간 및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 축제 개최자는 기상악화 및 긴급대피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 공간, 이동통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참가자에 대하여 홍보 및 사전교육 실시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차량, 구조 · 구급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관련기관 유기적인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안전요원 배치, 산불예방 캠페인 및 뒷불 감시반 운영, 사전 물 뿌리기, 산불 진화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하고 행사종료 시까지 지도 · 점검 실시

- 축제 개최자는 불 놓기 축제의 경우 돌풍 때문에 인접한 산림 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기상청 예보를 통해 바람이 많은 날은 불 놓기 행사 자제

- 불 놓기 허가의 관계기관은 허가에 앞서 산불예방 계획과 허가의 위치 및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축제 전 허가조건 등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다.

불꽃축제 안전사고 예방

- 불꽃축제 진행 중 꽃불 재료가(화약류) 개화되지 않거나 불발된 화약이 연소되지 않고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꽃불의 낙하지점은 안전한 장소로 계획한다.

-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꽃축제 발사대 주변에는 안전요원 배치와 safety line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불꽃쇼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데리고 오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홍보 실시
  - 어린아이들은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 지역축제 개최자 및 관계자는 꽃불류 제품의 운반 · 저장 또는 사용에 있어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축제장에 도착한 꽃불류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저장소 표지 및 경계선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과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즉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에 의한 점검 실시

- 꽃불류 발사장소는 직사광선 및 비와 이슬을 막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꽃불류 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화약류 저장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꽃불류나 불티 등에 의해 점화되지 않도록 조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꽃불 발사궤도 상공에는 어떠한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기관 통보와 언론 홍보 등을 한다.
  -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관람지역으로부터 타상연화가 멀어지도록 발사각도를 조절하고, 낙하 지역은 넓고 개방된 곳을 선택
  - 시가지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인접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타상연화의 사용을 자제하고,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과 자동차 또는 연소성 물질이 낙하지역 내에 있지 않도록 조치

- 불꽃놀이 행사 진행 때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축제 개최자는 허가기관과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와 논의하여 필요한 화재예방의 수준을 결정하고, 군중통제가 임무인 안전요원을 행사장 주위에 배치
  - 꽃불류를 사용할 때 사전에 정해진 위험구역 내에는 관계인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점화
  - 발사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모나 보호 안경 등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
  - 바람이 풍속 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거나, 돌풍 또는 비정상적인 기상상태로서 허가 관계자나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가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상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중단

화왕산 억새 태우다 불... 안전사고 발생!

정월대보름인 9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화왕산 정상(해발 757m)에서 억새태우기 행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번진 불길을 피하려다 등산객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행사진행요원들이 억새에 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불어 닥친 역풍을 타고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와 등산객들이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산봉우리에서 50여m 지점에 있었다는 이모(28)씨는 "억새 태우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불길이 갑자기 크게 번지자 뒤쪽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떨어졌다'며 소리를 질렀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불이 크게 번지면서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산 정상을 뒤덮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만 들렸으며 완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창녕군 등 행사진행 본부는 안전사고 소식을 알리면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하산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행사장에 있던 1만5천여 명의 상당수가 날이 어두운 가운데 사고와 불길에 당황하는 등 큰 혼잡을 빚었던 것으로 미뤄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 측은 "당시 민원 필수 요원을 제외한 500여 명의 직원들이 산 일원에 배치했다"며 "안전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갑작스런 돌풍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정상에는 행정 48명, 소방 20명, 경찰관 46명 등 114명이 있었다고 전해 전체 안전요원 배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창녕군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요약)

- 연합뉴스(2009. 2. 9) -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산불발생, 화재발생,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서, 구조 · 구급 등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 지역축제장 운영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인과 안전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 축제진행 중 화재발생, 폭발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safety line 설치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축제진행 시 행사진행 요원과 지휘통신망을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합동상황실을 설치 · 운영한다.
- 산지에서 불 놓기 등을 계획하는 축제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화선 구축, 안전요원 배치, 산불예방 캠페인 및 뒷불 감시반 운영, 사전 물 뿌리기,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꽃불재료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운반, 저장, 사용 등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역축제 중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축제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불 놓기 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 확인하기 위하여 인 · 허가 관계기관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지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산지에서 불 놓기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불 예방 조치계획과 허가의 위치 및 범위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 · 검토하고 행사 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시
- 지역축제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 시 축제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 단체와 현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행사진행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사관계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그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경찰서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 · 점검을 한다.
  - 안전관리계획이 현지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점검 시 중점점검 항목과 심의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축제에 시용될 꽃불류 화약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운반, 저장, 사용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 · 점검을 한다.
  - 안전관리계획이 현지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점검 시 중점점검 항목과 심의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소방차량, 구조 · 구급요원 등 현장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 · 점검을 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2. 눈 · 얼음

위험요인

- 겨울철에 개최되는 축제로 눈, 얼음 등을 활용하여 눈썰매, 얼음 조각상, 얼음 위 썰매 타기 등이 진행되는 행사로 눈썰매 접촉사고, 얼음 갈라짐으로 인한 익사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대상축제

- 눈꽃축제, 빙어축제, 동장군 축제, 얼음 나라 산천어 축제, 동계민속 예술축제, 열목어 축제, 겨울바람 축제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사례

○○시의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가 눈썰매를 타다가 다른 어린이와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발생 (2006, 부상 1명)

▶ 안전관리자가 배치 및 출발시간을 조정하였다면 사고방지 예상

2.1 일반 착안사항(공통)

- 얼음 위에서 개최되는 썰매타기, 낚시 등의 지역축제는 얼음의 결빙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참가하는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해 행사의 개최시기, 장소, 참가인원 등 축제계획 시 안전관리에 신중한 검토 요구

- 지역축제 계획 시 경찰서, 소방서, 수상구조대, 민간안전요원 등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행사기간 중에는 구조 · 구급요원 및 수상구조대 등을 행사장에 대기시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 구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히, 얼음의 갈라짐으로 인한 익사사고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구조 · 구급이 가능한 장비(예, 호버크래프트, 수륙양용차 등) 운용

-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결빙상태를 확인한 후 축제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숨구멍이나 얼음이 손상된 곳에 대하여는 위험표지판 또는 safety line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 결빙구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획하고 구간별 참가인원을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 동일한 조건이라도 위치와 물의 흐름에 따라 결빙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험구간을 사전 확인하여 Safety line 등 설치
  - 축제장 외각에는 Safety line을 설치하여 이용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낚시 또는 썰매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

- 겨울철 썰매타기 행사는 강 · 하천을 이용하여 축제를 개최하기보다는 겨울철 휴경지(논)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얼음 낚시터 축제계획은 얼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하고, 타공 지름이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얼음과 눈썰매장 등 특수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축제개최측은 현장 점검과 사전에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진행요원 정위치 등을 확인한다.
  - 축제관계자는 안전시설 점검, 구조장비 점검, 안전 활동 홍보 등을 확인과 현장지휘 조치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눈썰매 축제장의 주요 안전조치

- 경사도와 슬로프의 길이를 적정하게 하고, 슬로프는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한다.

-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어린이가 안전펜스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출발하기 전에 탑승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후에 출발 시킨다.

- 출발지점의 안전관리요원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시킨다.

- 어린이들은 방향 조절 능력이 떨어져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휘청거려 옆 사람과 부딪치거나 미끄러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안전 헬멧을 착용한 후 이용토록 한다.

- 축제장 출입구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축제기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방송 등을 한다.

- 눈썰매장, 얼음낚시터 등의 축제장은 축제 종료 후 해빙기에 행락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출입금지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2.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경찰서, 소방서, 수상구조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축제기간에는 현장지원체제를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 구급 등 안전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대책 수립 시 결빙상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축제개최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지역안전관리의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

경찰서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3. 가스

위험요인

- 지역축제 행사장에서의 가스시설은 음식만들기, 고무풍선제작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이동용 가스시설의 사용 부주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대상축제

- 이순신 축제, 찻사발 축제, 키조개 축제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사례1 ○○시의 축제장의 야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폭발사고 발생
(2007년, 부상 12명)

▶ 축제 전 안전관리자가 가스점검 미실시와 가스 안전수칙 미이행

사례2 ○○시의축제장에서 홍보용 대형풍선에 가스제거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2008년, 부상 2명)

▶ 가스전문가에 의한 작업추진 및 가스안전수칙 미이행

3.1 일반 착안사항

-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가스누출 때문에 폭발 ·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가스시설과 관련된 제품의 설치 · 관리 · 노후 ·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다.

- 가스폭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개최자,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공급자 등 관련 기관에서는 축제 전 가스 안전수칙 및 안전기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장에서 애드벌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축제 완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이 가스부족, 강한바람 때문에 인근 시설물과 접촉과 아이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례

- 지역축제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 중 발견돼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 이달 초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김규용)는 관내 장흥군 키조새 축제행사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이던 중 행사무대의 불꽃장치 연결부위에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빠르게 연결부위를 재결합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먹거리 장터의 LPG시설의 호스연결부위에서도 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 개선한 데 이어 노점상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노후시설 개선활동을 펼쳤다.
- 한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적으로 대단위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의 이순신 축제 현장에서는 야시장의 한 점포에서 LPG가 누출, 15명이 화상을 입는 등 축제현장 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 제공 –

지역축제 행사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LPG용기 설치는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체인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받침대 설치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스 누출 시 체류, 담뱃불 등 화기에 의한 폭발 우려

- LPG용기교체는 공급자를 통해 교체하여야 하나,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때에는 안전하게 분리 후 연결하여야 한다.
  - 조정기 분리방법
    ① 용기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근다.
    ② 조정기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

▶ 주의사항 : 조정기 분리과정 중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용기밸브 불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기를 재결합 후 가스공급자를 통해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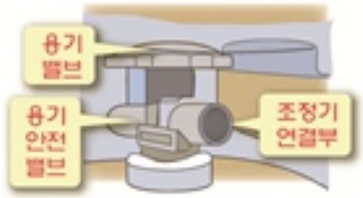

[용기 밸브 명칭]

[조정기 분리 순서]

  - 조정기 연결방법
    ① 조정기 핸들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결합 한다.
    ② 용기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연다.

▶ 주의사항 : 용기밸브를 열었을 때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용기밸브를 다시 잠근 후 조정기 결합상태를 재확인 후 용기밸브를 연다. 계속해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용기 밸브를 잠근 후 가스공급자를 통해 교체.

[조정기 체결 순서]

- 가스사용은 구역별로 별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 · 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가스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 공급자를 통한 용기교체, 가스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한다.
- 가스를 사용하는 개별 업소에 대하여는 개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축제 기간 동안에는 가스공급자가 상주하여 교체, 시설점검 등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축제 개최자는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사 전 가스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한다.
  - 가스저장실, 가스사용자, 소방서 및 현장통제 사무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와 차단 밸브 위치 표시 등 도면 배포 · 부착
  - 가스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의 최종 가스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행사규모와 기간에 따라 전용부스를 확보하여 공급자 대기와 검사장비 등 보관
  - 지역축제 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행사장소,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가스안전 설비에 관한 자문 실시
- 임시로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는 가스누출이 없는지 비눗방울 등으로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한다.
- 축제기간 중 가스시설의 불안전 설치와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문경 찻사발 축제사고!

값싼 수소가스 쓰다 풍선 폭발… 2명 화상

- 지난 5일 오후 5시쯤 발생한 풍선 폭발사고는 도자기박물관 인근 하천 위에 떠있던 풍선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자 관광객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주최측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현장에 있었던 자원봉사자 A씨는 "풍선을 묶어 놓은 끈을 당겨 밑으로 내린 후 가스를 빼기 위해 풍선을 누르던 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 이 사고로 가스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2명이 얼굴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경찰은 풍선에 수소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업체로부터 확인하고, 설치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상 헬륨가스를 주입해야 하지만 부양력이 떨어져 수소가스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 수소가스의 경우 헬륨에 비해 가격이 싼데다 부양력이 좋아 풍선 제작업체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요약).

- 매일신문(2008. 5. 7) -

3.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지역축제 행사장에 홍보용 대형풍선, 임시 가스시설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축제장 내 설치된 가스, 임시전기시설 등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은 축제 전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 등을 받고 사용토록 한다.
  - 지역 내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및 검사

※ 일반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일반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경찰서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지역축제 중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소방차량, 구조 · 구급요원 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축제주체에서 구조 · 구급요원의 현장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현장지원 조치

※ 일반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지역축제 중 이동용 가스시설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시설 설치와 지도 · 점검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LPG 가스시설의 불안전 설치 및 가스통의 햇빛 노출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우기에는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없는지 지도 · 점검 실시한다.

-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 · 점검을 하도록 한다.

- 축제장의 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등 노후 여부, 배관상태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입구 및 배기시설 설치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 가스배관 밸브 노후 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등

※ 일반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Ⅲ 시간적 위험 특성

1. 야간축제

위험요인

- 야간에 진행되는 축제는 빛, 불, 소리, 거리행진 등이 많이 진행되고, 축제의 재미를 높이려고 전야제 행사를 진행하던 중 낙마사고 폭발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축제 계획 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대상축제

- 빛의 축제, 불꽃축제, 유등축제, 별빛축제, 야간벚꽃 축제 등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시의 야간 억새 태우기 축제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람객 사고 발생(2009년, 7명 사망, 81명 부상)

○○군의 축제 중 야간 거리행진 중 불꽃축제 소리에 놀란 말이 날뛰다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 발생(2009년, 1명 사망)

○○군에서 야간전야제 행사로 봉화대 재현행사 중 폭발사고 발생(2009년, 2명 부상)

1.1 일반 착안사항

- 야간축제 행사장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관람객의 대피가 지연되어 대규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계획 시 충분한 대피 공간 및 진 · 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야외나 산악지역에서 불, 빛 등을 이용하는 축제의 경우 돌풍,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관람자가 동요되어 상황 대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고려, 축제계획 시 대피 공간 및 출입구 확보
  - 축제 개최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 구급,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실무회의 등을 거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2009 여수 거북선축제 낙마 사고!

- 여수 거북선축제에서 변을 당한 60대 기수는 말이 인도에 있던 관람객을 덮치려 하자 말의 진행 방향을 힘겹게 바꾸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여수 거북선 축제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기수 최모씨(61)의 '살신성인' 정신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거북선 축제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학덕씨(41·경기도 광주시)는 기수 최씨가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놀란 말이 인도 쪽으로 갔으면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오히려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져 많이 다쳤을 것이다"며 "그 분이 오른쪽으로 채찍을 잡아 당기지 않고 그냥 말이 달린쪽으로 놔 뒀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 김씨는 또 "최씨가 탄 말이 서너 차례의 폭죽 소리에 놀라 인도로 돌진하려 하자 최씨가 관람객을 피해 말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면서 다른 말과 부딪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말들은 기수가 최씨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애초 말의 진행 방향대로 달렸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와 함께 "방향을 바꾼 최씨의 말편자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을 폭죽으로 착각할 만큼 빠른 속도로 30m 가량을 달리다가 최씨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기수 최씨의 발 빠른 대처로 지난 3일 저녁 7시 45분쯤 여수경찰서 앞에서 거북선 축제를 지켜보던 300여 명의 관람객은 화를 면했다.

– 노컷뉴스(2009. 5. 12) –

- 야간축제의 경우 행사가 마무리되면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귀가 길을 서두르다 도로 무단횡단, 교통 혼잡상황이 우려되므로 경찰서, 안전관리 요원은 주변교통 정리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 행사장 내 야시장 · 노점상의 난립은 대규모 관람객의 이동 동선에 장애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관람객의 주 동선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 · 단속대책을 마련한다.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해맞이축제 등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적정 인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리행진, 불꽃놀이 등의 축제는 화재사고, 폭발사고, 낙마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행사주최자는 별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불꽃놀이 발사장 주변에는 관계인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Safety line 설치 등
– 야간 불꽃놀이 축제 중 기마행진의 경우 불꽃과 소리에 놀란 말이 날뛰다 낙마사고 발생사례가 있으므로 안전대책 필요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1.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 축제의 특성 · 시간계획 · 위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의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산불발생, 화재발생,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대비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 구조 · 구급 등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 야간축제의 경우 관람객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가 배치한다.
- 야간에 산지에서 불 놓기 등을 진행하는 축제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화선 구축, 안전요원 배치, 산불예방 캠페인 및 뒷불 감시반 운영, 사전 물뿌리기,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야간 행사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내 자가 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 안전관리계획이 현지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 · 점검 때 중점점검 항목과 심의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축제개최가 민간단체라도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 · 관리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경찰서

※ 안전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소방서

- 축제진행 중 대형 산불과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소방차량, 구조 · 구급요원 등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안전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전기, 통신, 가스 등

- 야간축제 진행을 위하여 자가 발전기를 사용할 때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조치사항은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 사항"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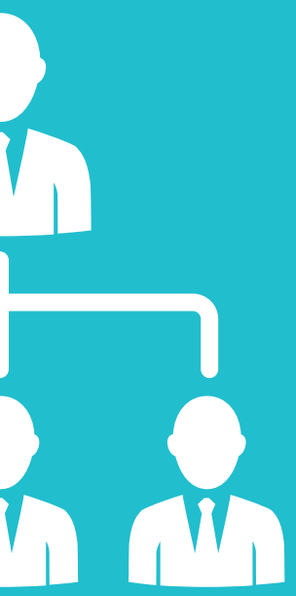

PART. 04

지역축제 상황관리 매뉴얼

Ⅰ 대응·수습 절차
Ⅱ 단계별 상황관리

Ⅰ 대응·수습절차

단계	중앙부처(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상황보고 및 전파	• 중앙부처 유관기관 상황전파	• 중앙부처(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초동 대응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관리관 파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운영 검토 •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 운영 • 재난사태 선포	▌시·도, 시·군·구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운명 • 인력 · 장비 등 동원 •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보건소) • 사상자 관리(병원별 담당자 지정) • 자원봉사자 관리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 대피 조치 ▌소방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 운영 • 구급차, 소방인력을 배치 인명구조와 사상자이송 • 인근소방서 응원요청 •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경찰 •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

단계	중앙부처(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수습 및 마무리	• 필요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긴급지원 검토 · 조치 – 생계구호비, 급식비 지원 등 • 주요인사(VIP,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시 접견 –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등 ※ 보고 : 차장 또는 상황실장 • 사고현장 방문(VIP,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시 수행 – 응급복구 현황파악과 피해자 가족 등 위로 • 사고조사단 파견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전문가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 행사장 안전점검 – 소방, 가스, 전기 등 협조 • 사망자 장례문제 협의 • 사상자 치료 대책 협의 • 사고가족 대표단과 피해수습 협의 • 성금모금운동 • 보상 미협의 시, 선 보상 후 구상권 조치 • 사고수습 응원요청 • 사고원인조사 • 긴급구조 활동 등 홍보, 주민홍보대책 등 ▌경찰 • 사고발생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수사 재난
재난 심리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Ⅱ 단계별 상황관리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상황 보고 및 전파	▌상황보고와 전파(법 제20조) • 상황보고와 전파체계 – 보고 : 신고자 ➡ 119상활실 또는 시 · 군 · 구 ➡ 시 · 도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 청와대 – 전파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재난상황 보고체계 : 붙임 – 관련기관 상황실, 119상황실 등에 사고내용 확인 • 현장상황의 구체적인 파악조치 지시 – 사고현장과 가까운 시 · 군 · 구, 읍 · 면 · 동 간부급 공무원 출동 – 휴대전화기,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상황보고장비 지참	
초동 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재난안전상황실/구두소집) • 차관(주재), 안전정책실장, 재난예방정책관, 예방총괄과장, 안전제도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조사분석관, 119구급대장, 119구급과장, 대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참석 〈주요검토사항〉 • 중앙 119구조대 출동 및 구조헬기 지원 여부 • 인근 지자체, 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구조장비 · 인력 응원 및 추가 지원 협조요청 • 사고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여부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 · 제16조) • 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 필요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설치 운영 – 본부장 : 시 · 도 및 시 · 군 · 구 자치단체장 – 설치장소, 근무반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관리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초동 대응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 · 수습 주도 • 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 영 제16조) –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광범위 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6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설치 · 운영(법제49조 · 제50조)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 ·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설치 · 운영 – 단장 : 소방청장, 시 · 도 소방본부장, 시 · 군 · 구 소방서장 ▌재난사태 선포(법 제36조) • 재난사태 선포 검토와 선포 건의 ▌긴급구조 현장지휘(법 제52조)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과 지휘 ·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설치 · 운영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수습 · 복구	• 현장지휘소설치 · 운영 – 사고현장 관할 구 · 군에서는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 초동대처 등 신속히 현장 사고수습 · 복구 조치 – 현장출동 각 기관 간 지휘 · 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상황실간의 유 · 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와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 · 통제 • 현장지휘소설치 · 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 요원 지원 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와 환자이송 – 현장 응급 의료소 필요물품의 확보, 관리 등 ※ 현장 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기구 : 붙임 ▌출입통제선의 설치운영 • 제1통제선 : 긴급구조 통제관이 설치 –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인력과 장비만 출입 • 제2통제선 : 경찰관서(통제선 주변 경비 포함) – 구조 · 구급차량 등의 출동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 지원하는 인력과 장비만 출입 • 경찰관서에 현장질서 유지대책 협조 요청 –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인력 · 장비 등 동원(법 제39조)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 · 의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와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 구급차 부족 시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추가장비 · 인력 필요 시 관할구역 안의 경찰관서,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군부대 등 출동요청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수습 · 복구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법 제40조)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유도 등 • 인근 건물 · 시설 긴급 안전점검, 통행자 · 입주자 · 차량 등 대피 ▌긴급구조 활동(법 제51조)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과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와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와 사망자 신원 파악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간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구조대, 군부대, 적십자사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분담 – 사상자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현장질서 유지 등 기타 효율적 구조와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단 파견 • 관련기관 합동조사반(재난관리책임기관, 검 · 경찰 등) 편성과 사고원인 규명 • 피해상황조사와 책임소재 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 · 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법 제60,61조) • 사고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마무리	▌사상자 치료 · 장례 등 대책 협의 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확보 및 의료진 협조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 · 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관리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등 ※ 필요 시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활동전개, 방역, 이재민구호대책 등 추진 ▌배상(보상)업무 추진절차 • 재난발생 원인 조사 · 분석과 함께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피해상황 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 :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및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시 · 도, 시 · 군 · 구에서 적극 중재 유도 등	
홍보 · 보도 대책	▌피해자 구조 활동 상황 등 보도 · 안내 • 취재 인력과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홍보책임자의 지정 · 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 모니터링, 사실 여부확인 • 공동취재진의 구성 · 운영 등 언론기관 취재 협조 – 사고현황, 피해자 대책, 복구계획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송부)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주민 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 시에는 사고 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필요 시 기관장 기자회견(간담회)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주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보도 요청, 주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재난상황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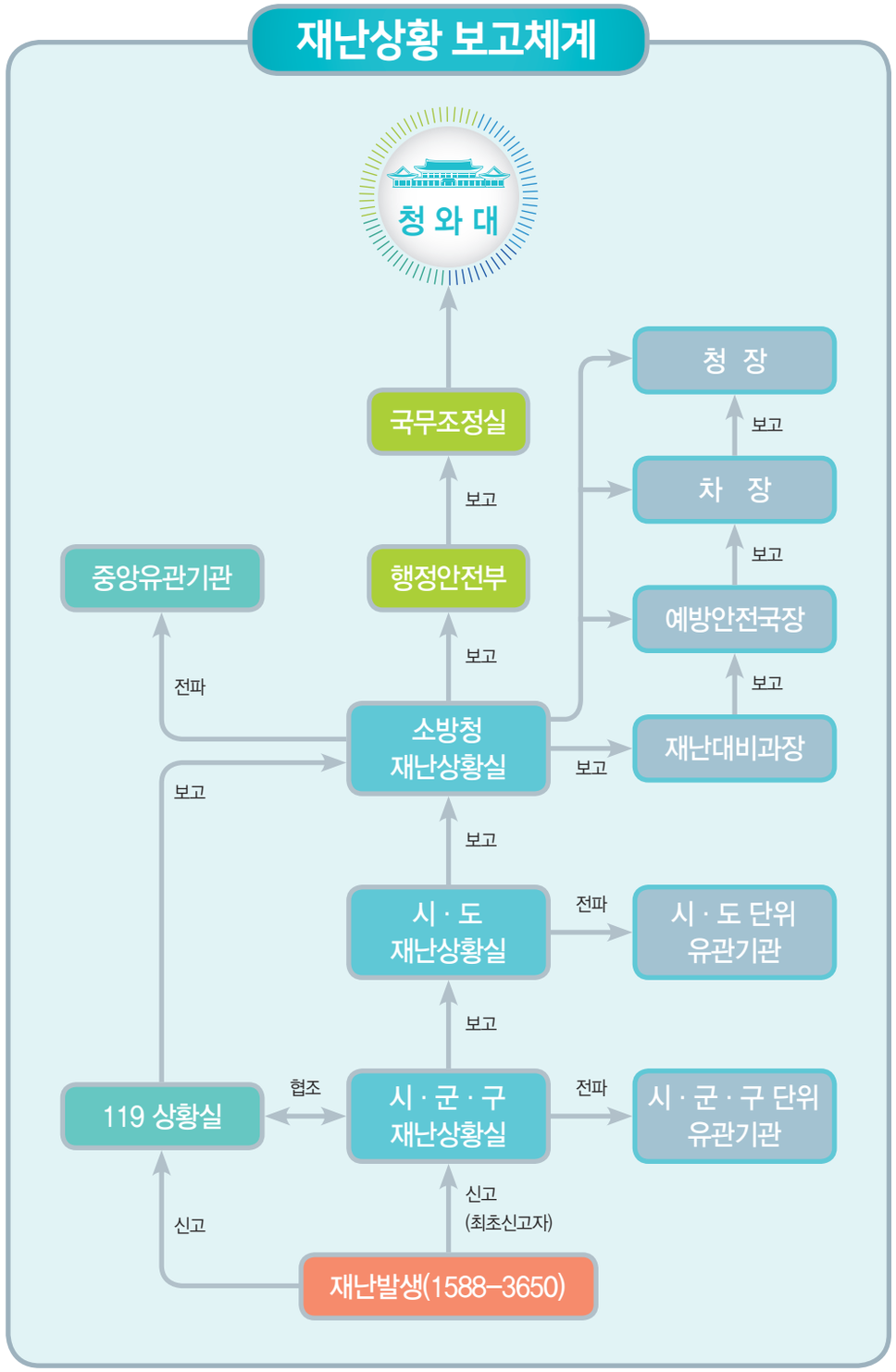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현장 지휘소

[시 ·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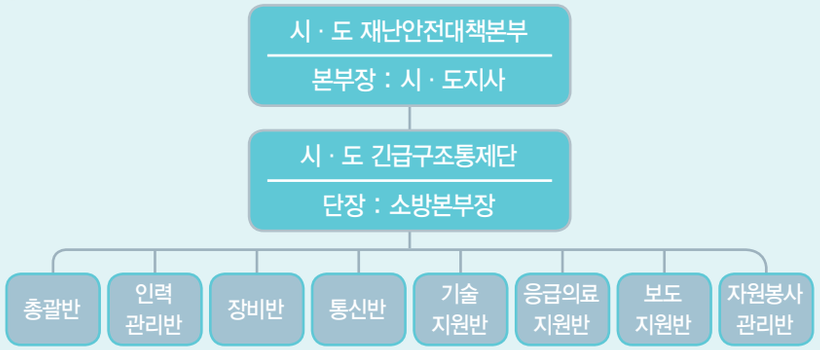

[시 · 군 · 구]

현장 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사회재난 수습복구 흐름도

상황접수 · 보고 · 전파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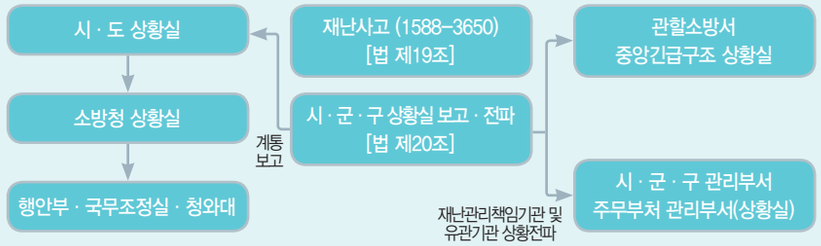

긴급 구조활동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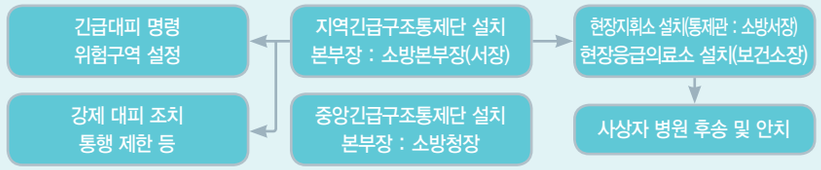

수습 · 복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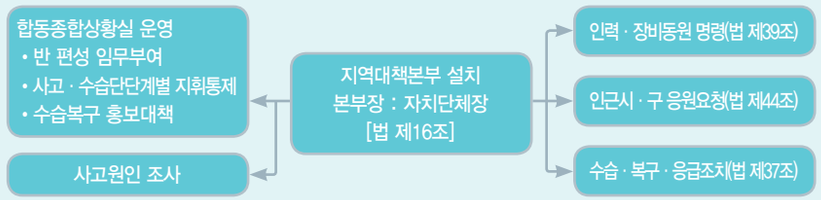

구호활동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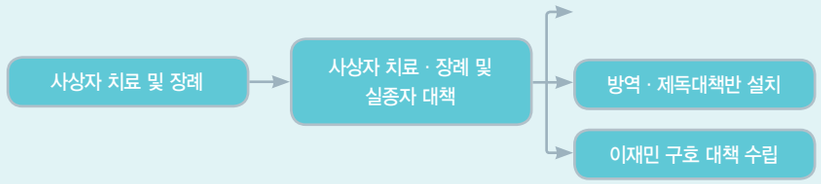

마무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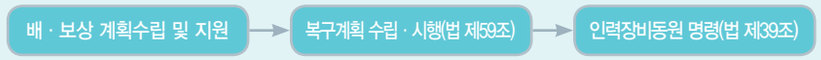

부 록

부록 ❶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부록 ❷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부록 ❸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부록 ❹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리스트

부록 1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2004~2017년 12월 현재)

축제명	일 시	사 고 내 용	피해현황
○○의병제전	'04.04.22.	• 운동장내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발생 • 행사장 식사준비 중 국솥을 엎질러 사고 발생	부상 4명 부상 4명
○○호수축제	'04.08.08.	•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수영경기 중 참가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강수욕축제	'05.07.30.	•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 중 부주의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05.10.03.	• 자전거축제의 부대행사 중 MBC가요콘서트 공연행사에 관람객이 일시에 출입문으로 몰리면서 주민이 압사사고 발생	사망 11명 부상 162명 재산 13,800만원
○○동장군축제	'06.01.	• 눈썰매를 타다가 앞에 정지되어 있는 아이와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발생	부상 1명
○○방어축제	'06.11.25.	• 축제기간 중에 정원을 초과한 소형어선을 타고 낚시체험 중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 발생	사망 5명
○○전통달집놀이	'07.03.04.	• 행사장내 순간적인 돌풍(초속25m)으로 텐트 전복 사고 발생	부상 4명
빛고을 ○○빛 엑스포	'07.04.27.	• 행사개막식 불꽃놀이 중 폭죽이 이동식 화장실 및 발전기 주변에 누출된 기름에 인화되어 조형물 및 차량이 연소되는 사고 발생	재산 49백만 (발전기, 간이화장실, 차량 7대 전소)
○○ 이순신장군축제	'07.04.30.	• 행사장내 야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폭발 사고 발생	부상 12명
○○황강 레포츠축제	'07.07.27.	• 어린이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물놀이 중 익사 사고 발생	사망 1명
○○인삼축제	'07.09.10.	• 축제 행사 중 활쏘기 대회에서 경기보조원이 화살에 머리를 맞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군항제	'08.04.01.	• 행사장에서 폭죽소리에 놀란 꽃마차가 날뛰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 발생	부상 2명

축제명	일 시	사 고 내 용	피해현황
○○찻사발축제	'08.05.05.	• 홍보용 대형풍선에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부상 2명 재산 1.35백만
○○자동차 마니아페스티벌	'08.05.23.	• 축제 퍼레이드 중 묘기를 부리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탈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08.09.30.	• 버스가 공연장으로 이동 중 관람객이 차도로 횡단하는 것을 버스가 발견하고 급정거 하다 탑승자 안전사고 발생	부상 1명
○○소방방재 장비엑스포	'08.10.15.	• 화재 대피용 완강기 하강 시연 중 보조 연결고리가 끊어져 추락사고 발생	사망 1명
○○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08.10.19.	• 병영체험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이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반시축제	'08.10.24.	• 전통문화 체험장에서 여성이 널뛰기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 발생	부상 1명
○○서동국화축제	'08.11.01.	• 행사장내 중앙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중 사고 발생	부상 1명
○○송어축제	'09.01.23.	• 평창송어축제장 내 "낚시판매 · 썰매대여용" 조립식 판넬 건물(약100㎡)에 전기합선 추정 화재사고 발생	재산 25백만
○○화왕산 억새태우기	'09.02.09.	•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미처 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덮쳐 안전사고 발생	사망 7명 부상 81명 재산 90백만
○○대가야축제	'09.04월	• 우수농산품 경매장에서 행사 중 대형 전광판이(10m × 1.8m) 전도되는 사고 발생	부상 14명
○○거북선 · 국제범선축제	'09.05.02.	• 범선축제 중 요트가 반환점을 돌다가 붐 대에 머리를 부딪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09.05.03.	• 봉화대 재현 행사 중 연막탄 폭발사고 발생	부상 2명
		• 통제영 길놀이 행사 중 폭죽소리에 놀란 말이 심하게 날뛰어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세계도시축제	'09.09.27.	•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70m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가 축제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나래연 줄에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부상 1명
○○세계불꽃축제	'13.10.05.	•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부상 14명
○○음악불꽃축제	'13.10.12.	• 폭죽재 일부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날려 관람객의 눈에 들어간 안전사고 발생	부상 23명

축제명	일 시	사 고 내 용	피해현황
○○○해맞이축제	'13.12.31.	• 해맞이 전야제 중 무대부 앞 폭죽이 터지면서 배관 내 가스 잔량에 의한 화재 발생	부상 2명
○○○마두희축제	'14.10.	• 줄다리기 줄이 끊어짐	부상 1명 (타박상 25명)
○○길페스티벌	'15.09.	•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사고	사망 1명
○○제	'17.04.02.	• 풍선터트리기 부스에서 어린이가 던진 다트가 풍선을 맞고 튀어나와 눈에 맞아 각막 손상	부상 1명
	'17.04.04.	• 소하천 데크로드 교량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난간파손으로 하천 추락	부상 1명
○○과자축제	'17.05.05	• 드론퍼포먼스 중 드론 기계결함으로 관람객 쪽으로 낙하하여 안전사고 발생	부상 33명
○○철쭉제	'17.05.26.	• 개막식 축포로 인한 산불발생 및 진화 작업 중 돌이 굴러와 머리 부상	부상 1명
○○바캉스축제	'17.07.30.	• 블롭점프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뛰어내려 플라이어 착지 시 충격으로 안전사고 발생	부상 1명

※ 연도별 지역축제 안전사고 현황('07~'17)

연도	건수	피해현황(명, 백만원)			
		합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합계	29	148	17	131	9,075
2007	5	18	2	16	45
2008	9	12	3	9	1
2009	7	108	10	98	9,025
2010	–	–	–	–	–
2011	–	–	–	–	–
2012	–	–	–	–	–
2013	–	–	–	–	–
2014	1	1	–	1	–
2015	2	2	2	–	–
2016	–	–	–	–	–
2017	5	7	–	7	–

부록 2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1. 공연 · 행사 · 지역축제 개요

1) 행 사 명 :

2)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3) 장　소 :　　(규모 :　　㎡)

4) 축제개최 :

- 개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총괄책임자 :　(주　소 :　전화번호 :　)

5) 보험가입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지급액:　)

6)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년　월　일(○○○공연 · 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대 :　~
- 최대 수용인원 :　명

7) 매표방법

※ 매표소판매, 인터넷판매, 매표소 + 인터넷판매, 무료입장 등

8) 주요행사내용

-

※ 경품추첨행사 등 이벤트행사 계획여부, 불꽃놀이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행사 등 고위험축제 포함여부 기재

9) 행사일정 :

일 자	시 간	장 소	공연 · 행사내용	비 고
	~ (분)			
	~ (분)			
	~ (분)			

※ 공연 · 행사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공연 · 행사별로 구분 작성

※ 주요 출연자(연예인 등) 공연계획

-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 장 소 :
- 출연자 :

10) 공연행사 · 지역축제장 장소 및 시설물 여건

▶ 배치도 및 평면도

2. 안전관리계획

1) 축제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 조직도

▶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성명) :
- 전화번호(휴대폰) :
- 위치별 및 임무별

위치별 · 임무별	책 임 자 (전화번호)	관리요원 (전화번호)	임 무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총괄 책임자(성명) :
- 전화번호(휴대폰) :
- 위치별 및 임무별

위치별	인원	질서요원			책임자 (전화번호)	임무 및 위치
		주최측	자원 봉사	전문 요원		

▶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 1. 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는 공연 · 행사장별로 구분 첨부

2. 축제장내에서 종합안내도, 무대, 조명, 스피커, 좌석배치도, 관람객 진 · 출입구, 관리자 ·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울타리, 출연자 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 · 출입구, 불꽃놀이 장소, 소화기 배치 등 위치표시

2)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 비상시 조치사항 및 연락처

발생 유형별	조 치 사 항	책임자(전화번호)
신 고	○○자자체 (성명) 전화번호, ○○자자체 (성명) 전화번호, ○○자자체 (성명) 전화번호,	홍길동(전화번호)
협의 · 결정	〃	홍길동(전화번호)
안 내	○○안내소 (성명) 전화번호,	김갑돌(전화번호)
대피유도	○○구역(성명), ㅇㅇ구역(성명)	홍선생(전화번호)
화재진압	안전관리요원 0조 투입 자제 진화 후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인계	박선생(전화번호)
응급의료	○○구급차 (성명) 전화번호, ○○병원 (성명) 전화번호,	김선생(전화번호)
차량 및 관람객통제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 (성명) 번화번호 협의	황선생(전화번호)
○○ 등		

※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시 관람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

▶ 비상연락망

○ 행사 주최 측

성 명	연락번호		임무 및 위치	비 고
	휴대폰	무선호출부호		

○ 유관기관

기관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사 무 실	휴 대 폰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 한국전력공사 등

○ 안전관리요원

성 명	연락번호		임무 및 위치	비 고
	휴대폰	무선호출부호		

○ 응급의료기관

기관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사 무 실	휴 대 폰	

※ 1. 비고란에 구급차, 인근병원을 표시하고, 응급처치 실은 사전에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편리한 장소를 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 구 · 군 지역축제 · 공연 · 행사 등에는 119구급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민간업체의 지역축제 · 공연 · 행사 등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조치

▶ 비상시 보고체계

3) 지역축제 사전준비 계획

▶ 사전합동회의 개최

- 일시/장소 : ○○○○. ○○. ○○.(○) 00:00/장소
- 참석 인원 : ○○명(행사주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 협의체 등)
- 회의주재 : 지역축제 주최측 책임자
- 주요내용
  - 행사참가인원 예측, 안전관리 요원배치 규모 및 배치
  -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및 유사시 기관별 역할 분담
  - 사전 합동지도 · 점검 실시 시기 등

○ 지역안전관리협의체 합동지도 · 점검 실시

- 일시/장소 : ○○○○. ○○. ○○.(○) 00:00/장소
- 참석 인원 : ○○명(행사주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 협의체 등)
- 주관 : 재난담당부서의 장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 주요 출입문, 무대 및 관중석, 기타 위험시설 등
  - 기 타 : 기타위험요인 및 분야별 사전 지도 · 점검 항목 마련
  - 지적사항 : 즉시조치(즉시 조치 불가한 시설, 사용금지 조치 등 대책 마련)

○ 합동상황실 설치 · 운영계획

- 운영시간 : 08:00~20:00(축제기간 내)
- 기능 :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책 강구
  - 주요상황 대내외 전달 및 대외기관 협력창구 역할
  - 상황의 수집 · 관리 · 처리기능 및 일일상황보고
- 구성 : 축제행사 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 야간 상황실 운영
  - 근무시간 : 22:00~익일 08:30
  - 근무인원 : 2명
- 주요임무
  - 야간 축제 행사장의 안전조치사항 등 야간동향
  - 상황 전화기록 및 접수

○ 종합 안내소 운영 등

- 운영시간 : 09:00~21:00
- 설치정소 : 관람객 주요 진 · 출입구
- 주요역할
  - 축제장내 시설물 및 각종 행사 안내
  - 관광 · 교통 · 숙박안내
  - 미아 발생 및 분실물 · 습득물 발생 신고 · 접수 · 보호(보관) 등
  - 주요 민원접수 관리 및 재해취약자(노약자 · 어린이 · 장애우 · 외국인 등) 안내

3. 유형별 안전관리 조치계획

1) 안전사고 발생 대비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

○ ○○안전대책(소방, 안전사고, 테러, 감염병, 교통, 혼잡, 익수사고 등)

- 지역축제의 장소적, 재료적, 시간적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마련
- 추진방향, 사고유형, 대처방안, 단계별추진방향, 비상연락망 등

※ 화재(불꽃, 풍등), 응급, 테러, 야간개장, 공연시 등 가상하여 작성

2) 안전사고 및 교통통제 관련 홍보문안

- 비상시 상황별 안내방송 마련

부록 3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1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 축제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여부
- 대지상태 및 행사장 위치 적정성
- 예상인원 수용 여부
- 행사장 주변 소음, 교통 등 피해 대처 방안 등

2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 · 운영

- 단체별 · 부서별 업무 분장,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임무부여의 구체성
- 안전관리 요원의 임무부여,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

3 안전관리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 관람객 일시 운집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 시 대피계획의 적정성
- 비상 응급조치 시스템의 구체성
- 사고발생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체계 등

4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보험 가입 등 안전확보 대책
- 안전관리 운영 계획 및 근무요령 매뉴얼 수립 여부
- 관람객 동선 및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등

5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처 계획

- 임시가설무대 전기차단, 관람객 난동 · 폭동 등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여부

부록 4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리스트

※ 점검리스트는 축제 유형 · 축제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점검내용	점검결과 (문제점 위주로 기재)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협의체(분야별 전문가) 현장 합동점검 추진사항 등	
○ 안전관리계획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보험가입 등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참고사항) – 공연 시작 · 종료 시 군중 흐름 통제 방안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관람객 대상 비상구 · 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 · 가설 구조물 등 추락 · 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참고사항)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 · 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사고 발생 시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시설물 분야	
○ 야외 임시 공연장 안전관리 상태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상태 – 손상, 균열, 누수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 부재 변위 · 변형상태	
○ 내 · 외부 마감재(타일 · 석재 등) 박리 · 박락상태	
○ 계단 논슬립 부착 및 파손상태 확인 등	

점검내용	점검결과 (문제점 위주로 기재)
소방분야	
○ 구조 · 구급요원 및 장비의 현지지원에 따른 위치 및 범위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여부	
○ 비상구 유도등(시인성, 방해요소, 작동여부 등)	
○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설치여부, 작동방해 등)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물건 적재상태	
○ 비상구, 계단 등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상태	
○ 경보설비 임의차단 등 관리상태	
전기분야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상태	
○ 누전차단기 사용 여부	
○ 자판기 등 편의시설 전기기계기구 외함접지	
○ 차단기와 전기배선의 상호용량에 맞게 설치 · 사용	
○ 수전반, 전압계, 전력계의 동작 상태와 과부하 · 과전압 등 지시계기 정상작동 여부	
○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한 주기적 무부하 시험운전 여부	
○ 행사장내 전선노출 여부 등	

점검내용	점검결과 (문제점 위주로 기재)
승강기분야	
○ 집중 인파 대비 현장에 맞는 유도동선 확보여부	
○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및 콤(Comb) 의 상태	
○ 에스컬레이터의 스텝과 스커트(측면 보호판) 사이 틈새 적정성 여부	
○ 화재 등 비상 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 승강기 내 · 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가스분야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 이상 용기 전도방지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여부	
○ 고무호스에서 분기 등 가스기기 이용상태	
○ 가스배관의 매설 및 고정상태	
○ 가스보일러의 흡 · 배기구시설 관리상태	
– 보일러 배기통 폐가스 누설여부 등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여부	
○ 이동식 부탄가스 사용 및 관리실태	
○ 행사장 내 애드벌룬 설치 시 주입가스 (헬륨가스) 확인 등(아세틸렌, 수소사용 금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비매품)

발행일 _ 2018년 5월

발행인 _ 행정안전부 장관

발행처 _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실 안전점검과
Tel : (044)205-4248~51
Fax : (044)205-8902

발간등록번호 _ 11-1660000-000404-14

※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